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7.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김동식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안 제4조부터 제9조)
- 장기기증 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년도별 장기기증 등록 현황

구 분	뇌사 시(건)	사후각막(건)	신장(건)	등록자(명)
2008년	42,801	52,891	2,160	58,926
2007년	38,312	47,636	3,163	52,511
2006년	42,641	61,114	2,552	67,712
2005년	48,231	60,239	4,284	67,394
2004년	7,583	8,605	846	11,788
2003년	5,152	5,216	872	6,682
2002년	15,139	15,269	2,167	18,473
2001년	9,162	11,283	1,013	12,844
2000년	10,777	12,367	934	13,862
1999년	16,344	19,340	991	21,089
1998년	5,676	7,150	391	7,806
1997년	6,514	8,832	617	9,722
1996년	3,338	5,274	472	5,935
1995년	1,496	1,538	226	2,148
1994년	2,025	2,155	257	4,688
1993년	695	623	83	1,030
1992년	449	318	100	657
1991년	113	117	84	229
합 계	256,448	319,967	21,212	363,496

■ 본부를 통한 실제 기증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각막 기증	신장기증	심장 기증	간장 기증	췌장 기증	폐장 기증	시신 기증자	전체 합계	뇌사 시 기증자
누 계	856	1,156 (뇌사145건포함)	37	76	8	4	1,055	3,036	145
2008년	56	12(뇌사)	5	6	-	2	-	-	6
2007년	36	29	-	-	-	-	-	63	2000년 KONOS 출범 이후 모든 업무가 이관 됨
2006년	17	31	-	2	-	-	56	106	
2005년	34	29	-	2	-	-	132	197	
2004년	12	45	-	7	-	-	105	169	
2003년	3	48	-	12	-	-	87	150	
2002년	-	44	-	4	-	-	101	149	
2001년	-	59	-	-	-	-	130	189	
2000년	-	65	-	-	-	-	112	177	
1999년	102	107	3	10	-	1	112	335	28
1998년	164	104	1	1	-	-	58	328	28
1997년	62	105	8	8	-	2	44	229	10
1996년	153	79	10	10	1	1	38	292	21
1995년	76	62	3	4	-	-	34	179	16
1994년	74	71	11	9	3	-	31	199	19
1993년	51	51	-	2	-	-	11	115	7
1992년	41	56	1	5	4	-	4	111	16
1991년	24	25	-	-	-	-	-	49	0

■ 타 자치단체 사례

- 서울시 자치구 : 송파구
- 기초자치단체 :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나주시, 목포시,
광주광역시 서구

■ 소요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70,000원 × 10명 × 4회(추정) = 2,800천원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영등포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는 장기기증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안 제11조에는 장기기증등록자와 기증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타 자치단체 사례는 송파구,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나주시, 목포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사회를 구현하고, 장기기증 등록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2.

보 고 자 : 권 오 운

관 계 법 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